

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년 6월 22일
도시·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: 2021년 5월 21일
- 나. 제안자: 김병진 의원 외 6명
- 다. 회부일자: 2021년 6월 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도시·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1.6.15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김병진 의원)

□ 제안이유

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구민의 교통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다. 피해지원금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시행규칙에 대하여 근거를 규정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
- 2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

나. 협조부서: 교통행정과

다. 입법예고(2021. 5. 27. ~ 6. 1.) 결과: 의견 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배금택)

가. 제정취지

-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 발생시 긴급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○ 목적(안 제1조)

-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○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“중대한 재난”¹⁾ 및 “마을버스운송사업”²⁾, 기준운송원가³⁾

1) 중대한 재난 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(출처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)

2) 마을버스운송사업 : 주로 시·군·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·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(출처: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)

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 함

○ 피해지원금 지원(안 제3조)

- 구청장이 중대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해 규정함
- ※ 지원대상(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에 포함)

1. 마을버스 노선 운송사업 감소로 손해가 누적되어 감축운행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
2.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

다. 종합의견

- 마을버스는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나 좁은 골목 등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하철·간선버스와 환승·연계를 통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등 서민 교통의 싹틔줄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음
-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와는 달리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는 지난 2004년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적자 업체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
- 서울시에서는 2011년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를 근거로 “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침”을 수립하고 적자업체 재정지원, 인센티브 지원 및 시설 확충 등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시행해오고 있으나,

3) 기준운송원가 :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의미함(출처: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)

- 최근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평균 승객수의 감소⁴⁾, 수년 간의 요금 동결⁵⁾, 서울시 지원운송 원가의 하향 조정⁶⁾ 등으로 관내 마을버스 업체들의 적자폭 증가에 따른 경영 악화로 현재 마을버스 운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

-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「코로나19 서울시-자치구간 민생경제 협력지원 대책」의 일환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난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⁷⁾ 및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⁸⁾에 따라 조례 제정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

- 다만, 이번 지원대책이 코로나19 재난상황에 따른 한시적 지원 성격으로 시행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지원기준을 설정하고, 추후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방안 검토 등 다각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) 일 평균 승객수 감소 : '19년 대비 '20년 1대당 일 평균 승객 수 25%감소(참고 관내 마을버스 현황)

5) 일반요금 2015년 이후 6년간 요금 동결, 청소년 14년간 요금 동결

- 일반: 교통카드 900원, 현금 1000원

- 청소년: 교통카드 480원, 현금 550원

6) 코로나19 고통 분담의 사유로 서울시 지원 운송원가 10% 하향 조정

- 지원 운송원가: 457,040원 → 411,336원 하향 조정

7)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
8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0조(재정 지원) ② 시·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

- 제1항 제2호 :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련 자료 및 관계 법령 각 1부

참고1

관내 마을버스 현황

□ 마을버스 운행현황

(2021. 3. 2. 기준)

업체	노선	기점	종점	등록 대수 (대)	요일	총운행 횟수 (회)	배차간격 (분)	1대일평균승객수(명)		
								'18년	'19년	'20년
계	8개			53						
대운 교통	강서05	강서 농수산물 시장	발산역	20	평일	157	5~8	857	819	552
					토요일	144	6~10			
					일요일	103	8~12			
	강서05-1	다솔마을	마곡 나루역	2	평,토, 일요일	53	20~25	173	184	145
염동 운수	강서04	염창역	경북 비즈니스고	5	평일	88	6~15	960	939	702
					토요일	76	9~20			
					일요일	66	9~20			
	강서06	벽산 아파트	벽산 아파트	8	평일	95	6~9	798	815	632
					토요일	84	8~15			
					일요일	60	10~15			
	강서07	생태공원	마곡역	2	평일	34	25~35	189	185	149
토, 일요일					34	25~35				
새한 교통	강서01	약수터	약수터	7	평일	126	7~10	853	847	646
					토, 일요일	108	8~12			
	강서02	남부시장	하이웨이주 유소	2	평,토, 일요일	24	20~25	513	554	430
부민 운수	강서03	약수터	신정여상	7	평일	91	10~15	724	758	595
					토요일	82	13~17			
					일요일	79	15~20			

참고2**관내 마을버스 재정수입(카드) 현황**

□ '19년 대비 '20년 카드수입금

구분	2019년	2020년	증감율
카드수입금	8,886백만원	6,675백만원	25%▽

□ 2019년 업체별 카드수입금

(단위: 원)

2019년	총이용금액	월평균 이용금액	일평균 이용금액	1대당 일평균 이용금액
계	8,886,360,930	740,530,078	24,279,675	1,836,060
대운교통	3,728,070,500	310,672,542	10,185,985	462,999
부민운수	1,199,104,210	99,925,351	3,276,241	409,530
새한교통	1,520,683,370	126,723,614	4,154,873	519,359
염동운수	2,438,502,850	203,208,571	6,662,576	444,172

□ 2020년 업체별 카드수입금

(단위: 원)

2020년	총이용금액	월평균 이용금액	일평균 이용금액	1대당 일평균 이용금액
계	6,675,486,900	556,290,575	18,239,035	1,400,243
대운교통	2,677,457,420	223,121,452	7,315,457	332,521
부민운수	942,183,800	78,515,317	2,574,273	321,784
새한교통	1,187,835,940	98,986,328	3,245,453	405,682
염동운수	1,868,009,740	155,667,478	5,103,852	340,257

※ 출처: 티머니(주) 2019년, 2020년 카드데이터 이용실적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2. ~12. (생략)

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

제3조(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.

1.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

가. 시내버스운송사업: 주로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.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·직행좌석형·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.

나. 농어촌버스운송사업: 주로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)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.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·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.

다. 마을버스운송사업: 주로 시·군·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·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

라. 시외버스운송사업: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.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·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.

2. (생략)